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176000 복학생에 대한 대학교수의 폭언

진 정 인 류○○

피 해 자 류○○

피진정인 박○○

주 문

○○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며, 피해자는 ○○대학교 국제태권도 전공 학생이다. 피해자는 군대 제대 후 복학 첫날인 2019. 3. 4. 09:00 ~ 10:00, 11:00 ~ 12:00 복학생 2명과 함께 같은 대학 지도교수인 피진정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태권도학과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피진정인이 “너희들은 불량품이다.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들 밖에 없다. 우리 학과는 졸업하고 군대 간다.”라고 얘기했다. 피진정인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던 중, 피

해자가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고 싶다”고 하자, 피진정인이 “너희들은 복학 신청을 잘못했다.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라고 했고,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이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벌고 싶다”고 하자, 피진정인은 “우리 학과는 알바 못한다. 니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우리학과는 수업마치고 무조건 동아리에 들어가 훈련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2019. 3. 6.경 학교를 자퇴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의 지도교수이다. 2019. 3. 4. 피해자 외 2명의 학생이 사무실에 복학인사를 한다고 찾아와 본인이 반갑게 환영했다. 복학생들은 고교 졸업 전부터 태권도 선수들이라 본인이 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입학상담부터 대학입학까지 담당했으며, 입학 후에도 일 년이란 시간 동안 태권도선수로 활동하며 본인과 같이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하여 타 학생들보다 많은 정과 시간을 보낸 학생들이다.

2) 2016. 군 복무로 휴학한 5명의 학생 중 류○○, 김○○, 정○○ 3명의 학생들만 복학을 했고, 본인과 학교생활부터 졸업, 취업까지 2시간 동안 많은 상담을 했다. 상담 도중 학생들이 복학한 시점으로 포커스를 맞춰 그 동안 태권도를 해왔고 태권도와 관련한 개개인의 진로를 다시 제시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양성 모듈을 설명하는 과정

에서 ‘불량품’이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것 같다.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 모두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 그들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 정성이 곧 빛을 볼 수 있는 시점에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본인도 모르게 나온 단어인 것 같다.

3) 또한, 학생들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발언에 대해 학생의 본분과 학생들의 과거 문제점을 짚어주었으며, 누구보다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산업체에서도 요구하는 좋은 인재로서 기대되는 학생들이었기에 좀 더 신중히 진로탐색을 하라는 취지로 한 얘기였다. 담당교수로서 아직 늦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다시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언어표현과 예시를 학생들에게 적절히 제시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4) 사건발생 이후 교학처장이 본인을 불러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했고, 2019. 3. 6. 교학처장실에서 교학처장의 입회하에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3. 관계인 의견

가. 박○○

1) 본인은 ○○대학교 교학처장이며, 2019. 3. 5. 10:30경 교학처장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면담한 후, 피진정인을 불러 함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과 진정서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가며 이야기가

오갔고, 진정서에 언급된 얘기들이 피해자 학생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 전체 학생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했다.

2) 피진정인은 2019. 3. 6. 피해자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말들에 대해 이 유가 어떠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피해자도 충분히 이해되었다며 피진정인과 악수를 하고 자리를 마무리 했다.

3) 이후 2019. 3. 7. 피해자가 중장비 자격증을 따기로 했으며 자퇴서를 가지고 와 그날 바로 자퇴 처리를 신속하게 해주었던 것으로,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 운영에 좀 더 충실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 겠다.

나. 정○○

본인은 ○○대학교 국제태권도 전공 학생이다. 2019. 3. 4. 복학 후 피해 자 류○○, 김○○와 함께 피진정인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피진정인이 “너희들은 불량품이다.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들 밖에 없다. 우리학과는 졸업하고 군대에 간다.”라고 얘기했다. 이후 계속해서 피진정인과 얘기를 나누던 중, “저희가 복학생들이라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얘기하자, 옆에 있던 이○○ 교수가 “너희들은 기술 배우면 공장에서 1년에 20일밖에 일 못 하는 애들이다.”라고 얘기했다. 이후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알바를 해서 등록금이나 용돈을 벌겠다. 오후에 알바를 하러 가겠다.”고 하자, 피진정인이 “너 신분이 뭐냐? 학생이냐? 우리 학과는 알바 못한다.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우리 학과는 수업 마치고 무조건 동아리에 들어가 훈련해야 한다.”

고 얘기했다.

다. 김○○

본인은 ○○대학교 국제태권도 전공 학생이다. 2019. 3. 4. 오전 피해자 류○○, 정○○과 함께 피진정인에게 복학 인사를 하기 위해 과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진정인과 얘기를 나누던 중, 피진정인이 “너희들은 불량품이다.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들 밖에 없다. 우리학과는 졸업하고 군대에 간다.”라고 얘기하여, 본인이 “우리가 왜 불량품이냐?”라고 반박한 사실이 있다. 이후 본인을 포함한 학생들이 “자격증도 따고 알바도 시간 날 때 하겠다.”라고 얘기하자, 피진정인이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만 전념해야지. 알바를 할 거면 알바생으로 하지, 왜 학교를 다니냐? 우리 학교는 수업마치고 무조건 동아리에 들어가 훈련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피해자는 이 일이 있는 이틀 후에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피해자가 피진정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들의 진술, 전화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경북 ○○시 소재 ○○대학교 ○○○○○○○학부 국제태권도 전공 학생이며, 피진정인은 같은 대학 국제태권도학과 교수로서 피해자의 지도교수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9. 3. 4. 복학 인사를 하러 온 피해자 외 2명의 학생에게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다. 2019. 3. 4. 피해자는 교학처장에게 피진정인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얘기했고, 2019. 3. 5. 교학처장은 피진정인을 불러 진정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2019. 3. 6. 교학처장이 피해자와 면담 중 피진정인을 교학처장실로 불러 같이 얘기하던 자리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라. 2019. 3. 7. 피해자는 학교를 방문하여 자퇴원을 제출했다. 자퇴원에는 자퇴사유가 '교수님과 마찰'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도교수 박○○ 및 학과장 박○○의 소견에는 '학과 적응 부족과 자격증 취득 준비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본인의 의사를 받아줌'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학생에게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이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누구보다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되기에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워 동기부여 및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하지만,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 니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등의 피진정인 발언은 단순히 표현이 정제되지 않고 거친 정도를 넘어, 학생들이 그 동안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 학생들의 선택을 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듣는 상대방에게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피진정인이 대학생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로서,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외에도,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자부심·자신감을 키워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점,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에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점 등에서,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발언은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발언에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나, 피해자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도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대학에서는 향후 학생들에 대한 유사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교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8.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